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조 성 권

韓國 麻藥犯罪와 麻藥政策에 대한 研究

- 1980年代 5共和國을 中心으로 -

A Study on Drug Crime and Drug Policies in Korea

- A Focus on The Chun Regime (1980-1987) -

200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麻藥犯罪學科

國際麻藥犯罪專攻

金 東 仁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조 성 권

韓國 麻藥犯罪와 麻藥政策에 대한 研究

- 1980年代 5共和國을 中心으로 -

A Study on Drug Crime and Drug Policies in Korea

- A Focus on The Chun Regime(1980-1987) -

위 論文을 麻藥犯罪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년 12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麻藥犯罪學科

國際麻藥犯罪專攻

金 東 仁

金東仁의 國際麻藥犯罪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2년 12월 일

審査委員長 홍 창근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김 지희 (印)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의 必要性	1
第 2 節 研究의 目的	2
第 3 節 研究範圍와 方法	3
第 4 節 麻藥 및 麻藥犯罪의 概念的 定義	4
第 2 章 韓國麻藥犯罪의 歷史的 變化	7
第 1 節 麻藥犯罪의 一般的 變化趨勢	7
第 2 節 組織的 次元의 麻藥犯罪의 變化	18
1. 麻藥密輸와 犯罪組織의 變化	18
2. 主要 事件 및 判例	20
第 3 章 麻藥政策에 대한 一般論	30
第 1 節 犯罪化 理論	30
第 2 節 非犯罪化 및 合法化 理論	31
第 4 章 韓國의 國家麻藥 政策	33
第 1 節 麻藥關聯 法律政策의 變化	33
第 2 節 麻藥關聯 國家機關의 變化	41
第 3 節 治療 再活 政策의 變化	46
第 5 章 國家 麻藥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50
(참고문헌)	53

表 目 次

(표 1) 마약의 종류	6
(표 2) 1980년대 마약사범 단속현황	8
(표 3) 1980년대 마약 압수현황	9
(표 4) 1980년대 마약사범 유형별 단속현황	10
(표 5) 1980년대 대마사범 단속현황	12
(표 6) 1980년대 대마 압수현황	12
(표 7) 1980년대 향정신성의약품 위반사범 단속현황	15
(표 8) 일본의 히로뽕 국가별 유입선	15
(표 9) 1980년대 향정신성의약품 압수현황	16
(표10) 1980년대 청소년 환각물질 소지 및 흡입사범 단속현황	18
(표11) 1980년대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22
(표12) 대검 수사팀이 작성한 히로뽕 인물지도 개요	23
(표13) 중독마약류별 치료보호 현황	48

“國文要約”

전 세계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향락, 퇴폐 풍조가 만연되면서 마약류의 남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엔사회개발기구(UNRISD)의 보고서에 의하면 마약류 불법거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천억 불 규모의 지하거래를 형성하고 있고 남용인구 또한 2억만 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1999년에 이미 마약범죄지수가 마약류의 확산 비등점인 20을 넘어 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마약류 사범은 어느 특정 지역 특정계층에서만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 학생, 심지어 농촌지역에 까지 침투되는 등 모든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고 있어 투약자들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한국의 마약정책은 공급차단 정책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재활 등을 통한 수요억제라는 종합적인 대응전략 보다는 단편적인 단속 위주의 엄벌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핵심적 세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첫째, 법률정책에 있어서는 시대별로 남용되는 마약류에 대하여 엄벌위주의 특별법제정 및 개정으로 대응하였으며 약물의 위험성이나 약리작용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류방법이 마련되지 않고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결과 법규 상호간의 불일치나 처벌의 불균형이 적지 않아 법체계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둘째, 마약류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도 기관별로 수사권을 확보 내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고 각 수사기관은 정보공유 및 협조보다는 상호 대립과 경쟁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셋째, 치료재활 정책에 있어서는 마약관련 개별법률에 중독자에 대한 강제수용이나 지정기관에서 치료하는 형식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적인 면에서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강제수용이 일종의 보안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중독자인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장치를 마련치 않아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한편 의료업자에게는 환자가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진단하였을 때에는 각종 보고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의료인에게 인간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치료재활의 면은 등한시되었다.

위와 같이 한국 마약정책은 공급사범에 대한 억제에 있어서는 일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용계층에 대하여는 사회문제나 보건문제로 다루기보다는 범죄의 한 형태로 보고 이들을 엄벌에 처하고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을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남용방지나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계몽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회 예방적 기능이 등한시되어 왔다.

따라서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억제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홍보와 계몽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마약류 남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에 의한 치료보호제도를 활용하거나 중독자 본인의 신청에 의한 치료보호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인 치료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급의 억제를 위하여 국제마약기구와의 협력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각 수사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수사기법의 개발이 중요하다. 즉 각급 수사기관에서는 외형적인 확대보다는 마약관련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공급사범의 검거력 향상을 위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必要性

마약류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파멸뿐 아니라 나아가 가정의 파괴, 범죄의 증가, 치료와 재활을 위한 비용의 증가 등 엄청난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야기한다. 세계 각국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마약류 남용이 급속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는 그 약물이 지니는 강한 신체적 의존성과 정신적 중독성 때문이라 하겠다.

일반적인 약물남용의 유형은 마약류의 환각효과를 즐기기 위해 남용하는 경우, 향락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 피로회복 혹은 체력유지를 위한 경우 혹은 진통, 치료효과의 기대, 불안감의 극복 등 다양한 원인을 들 수 있으나 문제는 마약류 남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위험성이나 해악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며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그 약물의 중독성이나 의존성 같은 것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¹⁾

단순히 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많은 위험을 일으키게 되는 약물 남용을 방치하게 된다면 먼저 사회 구성원의 건강 손실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각종 범죄의 발생과 고액의 고정수입을 보장받기 위한 음성적인 약물거래에 관여하는 범죄조직 등이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투쟁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자들의 움직임은 조직화되고 궁극적으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영업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는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²⁾

따라서 마약류 남용의 문제는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전 세계적

1) 조병인, “마약류 문제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4호. (1994. 겨울호). p. 154

2) 김달남, “약물범죄수익박탈제도에 대한 소고”. 전북대 석사학위 논문. 1997. (<http://forjustice21.com.ne.kr>). p.(?)

인 생활수준의 향상은 향락, 퇴폐 풍조가 만연되면서 남용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보고서에 의하면 마약의 거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천억불 규모의 지하거래를 형성하고 있다.³⁾ 마약류 남용인구 또한 2억만명에 달하고 특히 대마초는 세계 총인구의 2.45%에 해당하는 1억 4천만명, 코카인은 0.23%에 달하는 1,300여만명, 헤로인 및 기타 아편류는 0.14%에 달하는 800여만명, 필로폰은 0.52%를 점유하는 3,000여만명이 남용하고 있다.⁴⁾ 우리나라 또한 1999년에 이미 마약범죄계수가 마약류 확산의 비등점인 20을 넘어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마약류 사범은 특정지역 특정계층에게만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 학생, 심지어 농촌지역에 까지 침투되는 등 모든 일반연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투약자들도 날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⁵⁾

세계 각 국은 자국의 마약류 남용의 근절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⁶⁾ 우리나라 또한 대검찰청의 마약과를 마약부로 승격하는 한편 경찰청에서도 마약과를 신설하고 각 지방경찰청에는 마약계를 신설하여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에 대한 연구와 대응은 현대국가의 국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마약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차단 나아가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은 현대 마약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第 2 節 研究의 目的

마약류에 대한 문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가고 있으나 그간 한국의 마약정책은 공급차

3) 신의기, "해외마약범죄 어떻게 수사하고 있나?" 「수사연구」, 2002. 4월호. p.15

4) 경찰청, 「마약류 사범 수사실무」 2001, p. 3.

5) 마약범죄계수란 인구 10만명당 적발된 마약사범의 수를 나타내는 계수로 마약 확산의 비등점인 20을 넘어서면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처벌과 치료를 통한 마약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6) 중국은 1997년 ‘마약과의 전쟁의 해’를 선포하였고 러시아 등 독립국가 연합(CIS) 12개국은 1997년부터 CANAL이란 합동단속을 벌여 마약류 유통을 단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태국에서는 마약퇴치를 위하여 2002년도에 주민들로 하여금 마약과 관련된 이웃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했다.(신의기. 위의 책. pp.18-21.)

단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재활 등을 통한 수요억제라는 종합적인 대응전략보다는 당시 남용되는 마약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단속위주의 억제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반면에 남용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홍보를 통한 예방전략은 등한시되어 왔다.

이러한 면에서 근대 이후 현재까지 시대별 정권별 마약정책과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겠으나 본 논문은 외형상으로는 유신 장기집권시대가 막을 내리고 개방화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칼라 TV 방송의 시작 등 소득수준의 향상과 향락문화의 번창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 등 현대개방사회로의 전환점이 된 80년대 5공화국을 중심으로 마약류에 대한 체계적인 마약사를 정리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약류에 접근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第 3 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한국에 마약류가 정확히 언제 유입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아편쟁이'에서 '뽕쟁이'라는 말이 사회 일반인에게 널리 퍼지기까지 남용되던 마약류는 아편에서 대마,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에 이어 최근 '도리도리'라 불리는 '엑스터시'와 '야바'라 불리는 신종마약류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변하여 왔다.⁷⁾ 60~70년대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여 일본으로 밀매하던 제조·수출국에서 일본과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밀매 차단 정책으로 인해 일본으로의 밀매루트를 상실한 국내의 제조·판매 조직이 잉여물량을 국내 소비시장에 판매를 시작하면서 메스암페타민 소비국으로 전환되었다. 이 논문은 메스암페타민의 유행이 시작되는 80년대 5공화국을 중심으로 마약사적 고찰을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연구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내용분석과 역사적 접근을 이용한

7) '엑스터시'는 암페타민계 유기화학 물질로 복용 시 혼수, 정신착란, 식욕상실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것으로 주로 해외교포와 유학생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야바'란 메스암페타민에 카페인을 첨가한 물질로 복용이 간편하고 기존의 마약보다 환각효과가 훨씬 강해 마약사범들이 선호하는데 주로 동남아인을 통해 밀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내용분석은 주로 마약관련 각종 연구서적 및 논문, 각급 수사기관의 관련 문헌 및 자료, 기타 언론보도 자료 등을 보강하여 문헌 중심으로 분석 고찰 하였다. 역사적 접근은 1980년대 한국의 마약범죄의 경향과 마약정책의 변화를 시계적 분석(time-series analysis)을 이용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그리고 마약 및 마약범죄의 개념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2장은 국내 마약류의 변화추세 및 조직적 차원의 마약범죄의 변화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은 마약정책에 대한 범죄화 이론 및 합법화, 비합법화 논쟁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4장은 마약관련 법률정책의 변화, 국가기관의 변천, 치료재활정책에 대하여 고찰한다. 마지막 제5장은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마약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第 4 節 麻藥 및 麻藥犯罪의 概念的 定義

마약이란 그동안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를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⁸⁾ 세계 보건기구(WHO)는 마약에 대하여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고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금단현상)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수사실무상 마약류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장기간 사용하면 사용자가 의존성 내지 금단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약물 또는 물질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물질 등을 포함한다. 마약류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본드와 부탄가스 등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⁹⁾ 마약류의 종류로는 (표 1)

8) 마약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일반인에게 의존성이 있으면서 오·남용되는 물질로 특별한 구분 없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 왔으나 마약류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정되면서 이를 마약류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9) 마약류관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저가의 비용으로 청소년 사이에 남용이 심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본드, 신나, 부탄가스, 도료 등 환각작용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마약은 천연마약과 합성마약, 한외마약으로, 대마는 대마초 대마수지 및 대마수지 오일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각성제, 환각제, 억제제(안정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본드와 부탄가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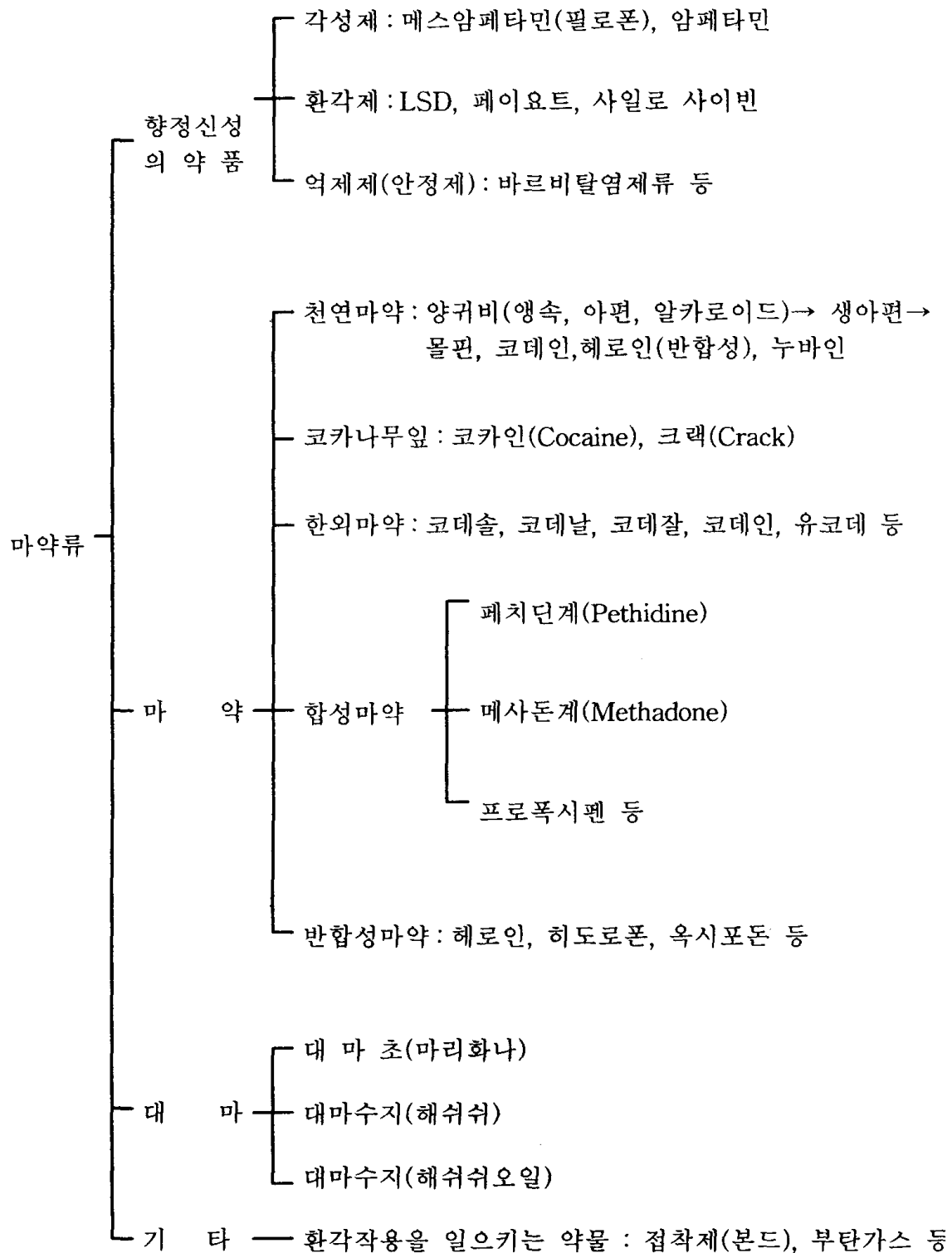
마약(류)범죄 또는 약물범죄란 수요자의 범죄와 공급자의 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¹⁰⁾ 그러나 수요자의 범죄로 한정하는 협의의 개념의 경우 오늘날 처벌보다는 비범죄화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마약류 범죄라 함은 “규제약물의 재배, 제조, 제제, 소분, 매매, 알선, 중개, 양도, 양수, 운반, 보관, 소지, 소유, 수입, 수출하는 행위 등 마약류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하여 공급자의 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¹⁾ 우리나라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 2항에 의해 규제약물을 수입, 수출, 제조, 제제, 소분, 재배, 양도, 양수 및 매매의 알선, 소지, 소유, 관리, 사용, 투약, 장소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약물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위를 규정하여 광의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여 마약류사범으로 단속, 관리하고 있다.

10) 김달님, “앞의 논문”, (<http://forjustice21.com.ne.kr>). p. (?)

11) UN의 비엔나 협약 제3조, 영국의 1986년 약물거래 범죄법 제38조, 일본의 마약특례법 제2조 2항 참조(김달님, 앞의 논문, p. ?.)

(표 1) 마약류의 종류



출처 :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2001), p. 43.

第 2 장 韓國 麻藥犯罪의 歷史的 變化

第 1節 麻藥犯罪의 一般的 變化趨勢

1. 마약

마약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반면, 사용을 중단하면 탐닉성 및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약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2조 2호에 규정한 마약의 종류로는 첫째, 양귀비, 아편 및 코카오훈; 둘째, 양귀비, 아편 및 코카오훈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셋째, 위에 열거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합성마약); 넷째, 위에 열거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등이 있다.¹²⁾(다만 한외마약은 제외한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유입된 시기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총독부가 아편을 단속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아편단속업무에 주력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에 벌써 아편중독이 일정 지역이나 일부 계층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약물남용은 해방이후 다수의 아편 중독자들이 귀국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여 50년대 한국전쟁이후 부상병의 치료를 위한 마약사용의 증가, 60~70년대 월남파병은 군인과 군속에 의한 월남산 생아편의 반입과 외항 선원들에 의한 아편밀수의 증가 등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단속정책으로 대응하였다

12) 마약법 제2조 1항 4호 단서 조항에 의한 한외마약이란 “위 호에 열거된 마약을 함유하고 있으나 타 약품과 혼합되어 위 호에서 열거된 것의 재 제조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하며, 주로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으로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하여 판매장부의 비치 판매허용량 제한 등 일정한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31조) 약국에서 시판중인 주요 한외마약으로는 코데날정, 코데솔 시럽 등이 있다.

80년대는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까지 마약사범의 검거건수와 압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70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대마초 열풍으로 마약의 주요 소비층이 대마초로 옮겨간 것도 주요 이유가 되겠지만 5공화국 정권이 들어선 후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사회악 척결의 명목으로 1980년 8월 '계엄 포고령 13호'로 불량배 검거령이 내려지면서 1981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6만 755명이 불량배 명목으로 검거되었다(소위 삼청교육대 사건).¹³⁾ 이때 마약의 주요 소비층(또는 잠재적 소비층)의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이들이 출소하기 시작한 1982~1983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과도 일맥 상통한다 할 것이다.

(표 2) 1980년대 마약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구 분 \ 년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건 수	116	98	98	203	202	361	315	212	252	790
인 원	128	140	134	203	202	361	375	239	268	857

출처: 대검찰청, 마약백서(1990). p.238.

※ 위의 통계는 1985년까지는 대검 기획과, 이후는 대검 마약과에서 관장한다.

13) 6만755명의 불량배 중 A, B, C, D급으로 분류해 A급은 군사재판 회부, B급은 4주 교육 후 6개월 노역, C급은 2주 교육 후 훈방, D급은 훈방조치가 결정되었다. 결국 B, C급 40,347명중 환자 605명을 제외한 3만9천7백42명은 모두 삼청교육의 순화교육대로 끌려갔다.(<http://www.humanright.go.kr>)

(표 3) 1980년대 마약 압수현황

(단위 : g)

년도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아편	0	1,800	166.7	1,755.7	2,044.6	0	9,721	4,184	0.5	97.96
헤로인	4	0	0	0	0	2,500	0	35,671	0	0.72
몰핀	1,108	171	120	4	7	0	0	0	0	0
코카인	0	0	0	0	2	0	0	0	0	0
코데인	200	0	0	0	0	0	0	0	0	0
앵속	171	315	2,024	8,167	3,913	3,618	5,260	15,242	23,408	36,985

출처 : 대검찰청 마약백서(1990), p. 240.

※ 통계는 1988년까지는 보사부 이후는 대검 마약과 통계.

※ 앵속의 단위는 '주', 몰핀은 '앰플', 코데인은 '정'.

(표 4)의 마약사범의 유형별 단속현황을 보면 밀수와 밀조, 중독자가 80년 이후 거의 자취를 감추거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밀매, 밀경, 마약취급자의 범법행위가 꾸준히 증가 내지는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자 해외 등지의 마약공급원이 두절됨으로서 국내에서의 소규모 밀경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밀매행위가 은밀히 성행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합법적으로 마약취급면허를 받은 의사나 약사 등 마약취급자의 부정유통이나 부정시주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4) 1980년대 마약사범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총 계	35	48	59	94	99	361	375	239	268	857
밀 수	2	0	0	0	0	0	0	15	1	0
밀 조	0	0	0	0	0	0	0	0	0	10
밀 매	3	11	22	5	10	18	36	30	0	17
밀 경	5	9	17	69	70	304	291	166	235	763
중독자	17	21	14	8	11	14	17	13	10	7
취급자	8	7	6	12	8	25	23	27	7	9
기 타	0	0	0	0	0	0	8	13	15	51

출처 : 대검찰청 마약백서(1990), p. 239.

※ 같은 자료에서 인용하였으나 인원과 유형별 단속현황이 다른 것은 통계의 오류로 보인다.

2. 대마

대마는 칸나비스속 일년생 식물로서 시베리아를 위시한 한대지방에서부터 적도열대 지방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재배되고 있으며 THC(Tetra Hydro Canabinoli)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대마는 흡연시 환각효과를 주고 우리나라도 오래 전부터 섬유용으로 재배되어 왔으며 대마줄기는 껍질을 가공하여 삼베옷감, 마대, 로우프 등의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서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대마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일체의 제품(대마수지 오일) 말하며 다만 대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¹⁴⁾ 대마의 종자 등에 대하여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동 법

14) ‘대마초’는 대마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시켜 담배형태로 만들어서 피우는 것을 말하며 통상 마리화나라고 부르고 있다. 대마의 주 정신 작용물질은 THC로 환각작용을 나타내는데 대마 잎에는 보통 1~3.5의 THC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무덤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서 성장한 대마가 THC 성분이 많고 솟나무 보다 암나무에 THC 성분이 많다. ‘대마수지’는 대마초 잎의 최고 좋은 성숙한 대마의 정상 꽃대 부분의 수지성 분미물을 알콜로 침출, 채취 또는 가마솥에서 고아서 건조 또는 농축한 제품으로 외국에서는 해쉬쉬라고 부른

제 3조 11호에 의거 대마, 대마초 종사 껍질의 흡연, 섭취행위, 흡연, 섭취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행위, 흡연, 섭취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 대마초 종자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알선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마초 흡연이 처음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 당시 UN군으로 참전한 터키군이 야생대마를 말아 피우던 것이 시초가 되었다. 월남전을 전후한 1960년대 말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마리화나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여 70년대 이후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Happy smoke'라고 지칭되며 권위주의 정권 하에 일종의 반항의미로 대학생 연예계 등지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대마가 이렇게 급속도로 남용되게 된 이유는 첫째, 대마는 섬유용 특용작물로 재배가 자유로웠고 야산에 자생하였으며; 둘째, 제조방법이 용이하고; 셋째, 효력이 마약과 흡사하였으며; 넷째, 가격이 저렴하고 특정한 흡연기구나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¹⁵⁾ 마지막으로 70년대 중반이후 연예인들이 대마흡입 혐의로 대거 구속된 것도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일반인들 상대로 대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켜 대마에 대한 남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¹⁶⁾

그러나 80년대는 (표 5)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마사범의 검거인원과 압수량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89년 1,025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 급격한 해외 개방화에 따른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향락추구 경향으로 일시적으로 남용

다. 대마수지에는 2~10%의 THC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환각효과는 마리화나 보다 6~10배 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수지 오일'은 대마초 또는 해쉬쉬를 농축 또는 건조하지 않고 증류공정 등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추출한 액체를 지칭하며 THC성분이 10~20%에 이르는 고도로 농축된 대마로 '해쉬쉬 오일' 또는 '칸나비스 오일'이라고도 부른다.(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 2001:53-55)

15) 문화체육부,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1966. p. 460.

16) 1975년 가수 신중현, 이장희, 윤형주, 장현, 김추자 등 18명이 대마초 흡연혐의로 구속된 이후 70년대 57명의 연예인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었다.(주간조선: 2002/ 3/ 28)

인구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증가는 1989년 보사부에서 검찰로 마약단속체제가 일원화된 이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표 5) 1980년대 대마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년도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검 거 건 수	295	286	221	478	408	328	212	170	214	519
검 거 인 원	537	553	372	478	408	328	392	318	351	1,025

출처 : 대검찰청 마약백서(1990), p.238.

(표 6) 1980년대 대마 압수현황

년도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대마초 (g)	163,054	1,230,344	4,160,088	94,447	74,343	289,426	71,629	43,575	5,709	154,604.89
해쉬쉬 (g)				122	2.02					
생대마 (주)	104,386	64,040	1,877						22,348	365,013
대 마 담 배 (본)	819	124								

출처 : 대검찰청 마약백서(1990), p.241.

3.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제2조 4호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 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 해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안전성이 결여 돼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거나 또는 매우 제한 된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말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로는 ① 마약류관리법 제 2조 4호 가목에 의 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3종, ② 마약류관리법 제 2조 4호 나목에 의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20종, ③ 마약류관리법 제 2조 4호 다목에 의한 향정신 성의약품으로 60종, ④ 마약류관리법 제 2조 4호 라목에 의한 향정신성의 약품으로 62종, ⑤ 마약류관리법 제 2조 4호 마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위에서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 7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은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의약명을 가지고 있는 속칭 ‘히로뽕’이다. 영어로 ‘Philopon’이라고 부르는 이 합성마약은 우 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각성제의 대명 사이다.¹⁷⁾ 일본에서는 2차 대전 패망 후 극도의 좌절감에 빠져들어 히 로뽕 남용이 시작되어 남용계층에서 파생되는 범죄자, 비행청소년, 매춘부 등 반 사회적인 집단으로 변화하자 1951년 각성제취체법의 제정과 수 차

17) ‘Philopon’이란 그리스어로 ‘일을 사랑한다’는 뜻이며 냄새가 없는 무색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처음에는 음용 후 심신이 가벼워지고 일의 능률을 올리지만 상용하면 환시, 환청, 피해망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1988년 일본 도쿄대의 나가이 나가요시 교수가 처음으로 만들어 냈고 1940년대 필 로폰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 됐다. 초기에는 근로자의피로를 덜어주는 약품으 로 애용됐으며 전쟁터에서 공포를 덜어주는 약물로도 사용됐다. 2차 세계대전 말에는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에게 투여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비교적 대량으 로 주사해도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험이 없어 중독환자가 발생하기 쉬우며 피 로를 덜어주고 식욕을 감퇴시키기 때문에 한 동안 젊은 여성층을 상대로 다 이어트 약물로 둔갑해 유통되기도 했고 바쁜 스케줄에 시달리는 연예인들도 주된 유혹의 대상이 되어왔다.

례의 개정을 통하여 벌칙의 강화와 중독자에 대한 강제입원제도, 염산에페드린 등 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조항 신설 등으로 1957년 어느 정도 진정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히로뽕 유통 공급망이 조직폭력단에 의해 장악되면서 한국을 거점제조 공장으로 이용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게 되었다.¹⁸⁾

우리나라는 1970년 8월 법률 제2230호로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어 1973년 일부개정으로 메스암페타민, LSD 등이 단속대상에 포함되기까지 이를 처벌한 규정이 없었다.¹⁹⁾ 따라서 고작 밀수차원의 단속을 하는데 그쳤으며 습관성은 없으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기존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 1979년 12월 28일 법률 제3216호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0년 4월 시행하여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약품도 함께 규제하여 암페타민류 및 이와 유사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 78명 이후 1986년 862명에 이르기까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87년 1,459명, 1988년 3,320명, 1989년 1,994명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과 더불어 활발해진 해외교류는 한국의 마약시장까지 개방되게 되었고 또한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본과 한국정부의 강력한 밀수출·입, 밀조, 밀매조직 단속으로 일본에 유입되는 한국산 히로뽕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유통 루트를 상실한 국내 제조·유통 조직이 잉여물량을 국내로 유통시켜 중독자들이 급상승하게 된 것도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²⁰⁾

18) 원료 공급, 제조, 밀수입의 경로가, 홍콩→한국→일본의 유통경로는 소위 말하는 ‘백색 삼각지대(White Triangle)’라 불렸다.

19) 마약중독자들이 대체약물로서 습관성의약품을 남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1970년 8월 법률 제2230호 습관성의약품 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1973년 일부개정으로 메스암페타민, LSD 등을 포함하여 단속하게 되었다.

20) 또는 밀조, 밀매 사범의 수법이 더욱 교묘화 되었거나 밀조책들이 원료 수출국 이던 대만, 홍콩 등지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표 7) 1980년대 향정신성의약품 위반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년도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검 거 수	27	82	250	420	417	501	323	661	1,990	1,237
검 거 인 원	78	216	501	420	417	501	862	1,459	3,320	1,994

출처 : 대검찰청 마약백서(1990), p.238.

(표 8) 일본의 히로뽕 국가별 유입선

(단위 : %)

년도 나라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한 국	56.4	80.9	86	76	94	76	50	20.8	34
대 만	27.5	0.8	14	24	0	24		63.4	55.5
홍 쿡	15	18.3	0	0	6				
압수량	66.3kg	71.9kg	110kg	102.8kg	73kg	58kg			

출처 : 1983년까지의 통계는 조갑제, “폭력과 광기의 지옥기행”, 월간조선 84년 2월 호에서 인용하였고, 1984년 이후는 차용범 “히로뽕 지옥 부산의 밤과 낮” 월간조선 88. 8월호에서 인용하였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년대 압수된 향정신성의약품 대부분은 메스암페타민으로 1986년을 기점으로 압수량이 급증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심각한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9년 마약류 수사·단속권이 보사부에서 검찰로 이관되어 90년대 대대적인 밀조사범 소탕에 나서게 되며 보사부는 치료재활에 치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표 9) 1980년대 향정신성 의약품 압수현황

[단위 : 메스암페타민(g), 염산에페드린(kg), 바르비탈(정)]

년도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LSD	75정	-	6매	-	-	-	-	-	-	-
메스 암 페 타 민	52,800	50,332	85,859	57,363	47,892	24,349	34,157	120,761	73,538	131,619
염 산 에페드린	1.5	-	-	60	-	-	-	0.5	-	690
암페타민	-	-	-	6정	-	-	-	-	-	-
바르비탈	6	2,120	3,588	4,206	2,935	-	-	-	788	-
푸 로 폭시펜	-	-	-	-	-	-	-	-	-	-

출처 : 대검찰청 마약백서(1990), p. 242. 단, 1988년까지는 보사부 통계 재인용.

4. 유해화학물질²¹⁾

유해화학물질은 마약류는 아니나 과다 흡입할 경우 인체의 중추신 경계에 작용하여 흥분·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한 환각물질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로는 페인트, 염료, 화약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톨루엔(Toluene), 무색투명, 휘발성 액체로 마취 작용이 있는 초산에틸(Ethly Acetate), 시신경에 장애를 일으키며 다량 축 적되면 실명 내지는 사망에 이르는 메칠알콜(Methly Alcohol)과 이러한 물질을 함유하는 신나, 접착제 및 도료 등이 있다. 최근 남용되기 시작하 여 시행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탄가스(Butane Gas) 등도 있다.²²⁾ 외국에 서는 휘발성물질(Volatile substances) 또는 흡입제(Inhalants)라고도 불린다.

21) 유해환각물질이라고도 하며 최근 유사마약류로 분류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22) 1992. 7. 1.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탄가스 흡입사범도 처벌하게 되었다.

유해화학물질은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쉬우며 그 흡입도 단순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청소년 사이에 남용이 심하며 호기심이 많고 동조성향이 강한 청소년층에서 죄의식 없이 그 흡입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전파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자체의 폐해 외에도 남녀혼숙, 강간, 절도, 폭력, 강도, 살인 등 예측 불가능한 다른 범죄의 유발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마약류는 아니지만 수사실무 상 이를 마약류에 포함하는 의미로 단속 관리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은 1970년대 청소년 사이에 본드, 신나 등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를 규제할 법률이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환각성 접착제 등의 오용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다.²³⁾ 이 법에 따라 환각물질 흡입 등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독극물을 함유하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이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²⁴⁾ 또한 환각물질은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규제를 시작하였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유해환각물질 소지 및 흡입 사범은 1980년 500명, 1981년 357명, 1982년 348명 등 1985년 359명이 검거되기까지 안정 내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아시아게임이 열린 1986년을 기점으로 532명, 1987년 598명, 1988년 767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약물과 접촉하면서 약물을 사용할 기회가 많아 졌기 때문이다. 또한 양대 체육행사를 치르며 청소년의 약물에 대한 의식이 개방화되어 다른 약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싸고 구입이 용이한 유해화학(환각)물질에 탐닉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23) 1963년 12.13. 법률 제 1492호로 제정된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마약류와는 무관하였으며 독물 및 극물에 관한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1990. 8. 1. 법률 제426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24)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23조의 2 신설.

(표 10) 1980년대 청소년 환각물질 소지 및 흡입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구 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검 거 인 원	500	357	348	328	317	349	532	598	767	596

출처 : 내무부 치안본부(1989), 경찰통계연보

※ 1980년 12월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환각물질의 소지나 흡입 등의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을 볼 때 1980년의 검거통계는 오류로 추정된다.

第 2節 組織的 次元의 麻藥犯罪의 變化

1. 마약밀수와 범죄조직의 변화²⁵⁾

우리나라의 밀조사범들의 근간은 일본의 야쿠자조직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 내지 쇠퇴하여 왔다. 전후 일본에서는 각성제 남용이 만연하게 되고 직접 히로뽕을 제조 판매하였으나 1951년 ‘각성제취체법’을 시행하며 강력히 단속한 결과 60년대 히로뽕 제조를 할 수 없게 되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제조기술을 습득 후 귀국한 김화순, 전광복 등이 야쿠자와 손을 잡고 히로뽕을 만들어 밀수출하여 왔으며 편의상 이를 히로뽕 제조의 제1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 1세대 밑에서 제조법을 배운 사람들로 이황순, 노재복 등이 있었는데 이들을 마약제조의 제 2세대라고 부르며 70~80년대에 주로 활동했다.²⁶⁾

80년대 이전의 히로뽕 밀조 또는 밀수 사범들은 야쿠자와 손을 잡고 밀조한 히로뽕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는데 이들 히로뽕 밀조, 밀수에 획기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1972년에 발생하였다. 청와대의 특별하명을 받은

25) 밀조·밀수출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메스암페타민 사범을 위주로 고찰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조갑제, “코리안 커넥션”, 월간조선, 1983. 12월호를 볼 것.

26) 강진영(수사연구 취재기자), “서울경찰청 형사과 마약계 경사 고석중 인터뷰”, 수사연구, 2002년 4월호, p. 28.

서울지검 특별수사반에서 부산항을 통한 대규모 금괴 및 시계 밀수사건을 파헤쳐 3개 밀수조직 19명을 구속하고 다른 3개 조직 28명을 수배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반이 발표한 밀수 조직표에는 최완수(당시 40세. 금괴하주), 이황순(38세.시계하주), 고광남(31세.운반책), 선달남(29세.금괴운반책) 등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밀수로 잔뼈가 굵은 이들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까지 모두 거물 히로뽕 조직의 두목급으로 변신했다. 80년대 대규모 히로뽕 사건 때마다 이들은 원료 공급책으로 때로는 밀조, 밀매책으로 관련되어 히로뽕 제국사의 주요 배역을 맡게 된다.

1972년 부산항 밀수조직의 붕괴는 조직원들을 히로뽕으로 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히로뽕 밀매에 부산 밀수조직이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히로뽕 산업은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밀수산업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 밀수조직원들은 야쿠자에 의해 한국의 제조 기술자들에게 원료를 제공하고 제조된 히로뽕을 밀수선을 이용 일본으로 밀수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원료 조달체계를 확보하였다. 이들은 일본 야쿠자와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 대등하거나 또는 우월한 입장에 서게된 것이다. 홍콩에서 한국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공식화된 공급루트에 따라 대량의 염산에페드린이 밀려옴으로서 히로뽕 생산량도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원료 공급 루트 뿐 아니라 대일 밀수출 루트로 여러 갈래로 개척하였다. 대일 외항선과 활선어 수출선 등이 한·일간 벨트역할을 하며 80년대 끊임없이 일본 쪽으로 히로뽕을 실어 나르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80년대 이들 밀수 조직들은 부산의 조직폭력배들도 같이 끌고 들어갔는데 부산의 2대 폭력조직인 칠성파(두목 이강한), 20세기파(두목 정종식)를 필두로 폭력배들은 히로뽕 밀매 알선에 손을 대게 되었다. 이들은 부산에 자주 들르는 일본 폭력단의 말단 조직원들과도 긴밀히 접촉 히로뽕 판매망 확충에 일조를 하게 되었다.²⁷⁾

그러나 이들 조직폭력배의 마약류 밀매사업에의 개입은 부산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여타 지역에서 폭력배들의 개입사례는 발견된 바 없다. 일본의 히로뽕 남용계층의 급속한 전파의 배후에는 야쿠자라는 거대

27) 조갑제, “코리안 커넥션”, 월간 조선, 1983년 12월호.

한 세력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80년대 불량배 소탕령으로 인한 삼청교육대 사건, 90년대 범죄와의 전쟁 등으로 인한 폭력배의 대대적인 소탕 등은 적어도 90년대까지는 야쿠자와 같은 거대 폭력조직의 출현을 저지하고 폭력배들의 마약류 불법거래 개입을 차단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2. 주요사건 및 판례

가. 삼청교육대 사건²⁸⁾

1980년 8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불량배 소탕이란 명목으로 계엄포고령 13호 사회악사범 소탕령(소위 불량배 소탕)이 내려지면서 1981.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6만755명이 불량배라는 명목으로 소탕되었다. 검거된 사람들은 분류심사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내용은 A급은 조직폭력이나 공갈, 치기배의 수괴 또는 중간간부급, 상습폭력배 중 폭력실형 전과 2범 이상, 기타 흉기를 소지하고 극악한 행동을 한 자, 강도 절도, 마약의 현행범 등으로 하였고; B급은 조직폭력과 공갈치기배의 행동대원, 기타 정치, 경제폭력배, 상습 도박자, 사기꾼, 폭력우범자, 강도, 절도, 밀수 마약전과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와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C급은 폭력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죄자 혹은 B급에 해당하는 자중 정상이 참작된 자들이 분류되었으며; D급은 초범이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아울러 학생이나 소년으로서 직업과 거주가 일정한 자를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검거된 자중 A급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B급은 4주 교육 후 6개월 노역; C급은 2주 교육 후 훈방; D급은 훈방 조치됐다. 결국 B·C급으로 분류되어 군에 인계된 40,347명중 환자 605명을 제외한 39,742명에 대하여는 1980년 8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전후방 25개 군부대

28) 1980년 7월 29일자 불량배 소탕계획인 ‘삼청계획 5호’에 따라 추진된 사업을 말하며 삼청교육이라 칭하게 된 이유는 국보위 사무실이 있는 삼청동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8월 1일부터 이미 소탕작전을 시작하여 어느 정도 검거한 상황이었으나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8월 4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명의로 계엄포고령 제13호를 사후적으로 발동한 것이다.

에 분산 수용하여 순화교육을 시켰고 순화교육 후 이들을 재분류 심사하여 10,016명을 근로 봉사케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980년 8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삼청계획 5호’의 지속성을 위한 보호관찰 제도 도입이 건의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980년 12월 사회보호법을 제정하고 1981년 1월 삼청교육대 교육생 중 근로봉사와 순화교육자를 합하여 10,228명에 대하여 사단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여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에 보호감호처분을 상신하였다.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는 그중 2,710명을 석방, 7,578명은 보호감호처분을 결정하였다. 즉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대 교육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때 처음 입안된 것이다.²⁹⁾

또 한가지 소탕령 시행배경이야 어떠하던 간에 A급과, B급에 마약관련 전과자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중 몇 명이 마약과 관련된 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에서 1982년까지 마약사범의 숫자가 급감하였으나 1982년 내지는 1983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시의 강력한 억제정책이 마약류 범죄에 있어서는 성공한 사례로 분석될 수 있다.

29)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전정배 사건 발표자료”. 2002. 10. 1. 직권 제85호(<http://www.humanright.go.kr>).

(표11) 1980년대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구분 년도	마약		대 마		향정신성의약품		유해화학물질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1980	116	128	295	537	27	78		500
1981	98	140	286	553	82	216		357
1982	98	134	221	372	250	501		348
1983	203	203	478	478	420	420		328
1984	202	202	408	408	417	417		317
1985	361	361	328	328	501	501		349
1986	315	375	212	392	323	862		532
1987	212	239	170	318	661	1,459		598
1988	252	268	214	351	1,990	3,320		767
1989	790	857	519	1,025	1,237	1,994		596

자료출처) ① 대검찰청 마약백서(1990), p238.

② 내무부 치안본부(1989), 경찰통계 연보.

※ 마약, 대마의 통계는 85년까지는 보사부, 이후는 대검마약과 통계를 이용, 향정신성의약품 위반사범은 88년까지는 보사부의 통계를 이용, 이후는 대검 마약과 통계를 이용, 유해화학물질은 내무부 치안본부 경찰통계 연보를 이용함

나. 만다린, 윤타이호 사건³⁰⁾

(1) 사건의 개요

1978년 수원지검 인천지청 윤재기 검사가 금괴 밀수의 중간판매책이던 안신숙(당시 39세)의 금괴강탈사건을 수사하면서 계기가 되었다.³¹⁾ 1979년 12월 인천항에 입항한 만다린호와 10일 후 입항한 윤타이호에서 다량의 밀수품을 압수한 후 국내 밀수조직의 소탕에 나서고 명단을 작성 수사에 착수하였다. 대상자 중 히로뽕 관련자가 많은 것이 밝혀지자 1980년

30) 조갑제, “코리언 커백션”, 월간조선, 1983.12월호를 요약.

31) 서울 00 경찰서 형사 2명이 정보원의 부탁으로 인천에 정박중인 외항선에서 밀수품인 금괴를 건네 받아 중간 판매책에 전달하는 척하며 금괴를 강탈한 사건이다.

1월부터 수사의 주력이 히로뽕 루트를 캐는데 쏠리기 시작하였다. 인천지청, 대검찰청 특수부 4과, 부산지검이 차례로 바통을 이어가며 수사한 결과 유통책 김규철 남기룡, 원료 유통책 최판호, 이화선, 조적찬 등의 검거에 이어 밀매책 김용권 밀조책 최재도, 김병목, 이황순 등을 검거하는 성과뿐 아니라 이를 비호하던 세력까지 검거하게 된다. 즉 만다린호 사건 → 최판호 검거 → 최재도 검거 → 이황순 검거 → 히로뽕 조직 비호세력 검거로 마감된 사건이다.

(표 12) 대검 수사팀이 작성한 히로뽕 인물지도 개요

원료 밀수조직	임진례, 조적찬, 위중홍, 정재창, 관진국, 오진선 최완수, 임호직, 김규철, 연세찬, 오봉서 등
원료의 공급·유통 제조 조직	최판호, 이황순, 최재도, 이화선, 길태인

※ 이들은 대부분 밀수계통을 주름잡던 인물이었으나 70년대 중반 대대적인 밀수 조직 단속으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히로뽕 밀수계의 대부로 등장하게 된다.

(2) 사건의 의의

만다린호 사건은 첫째, 홍콩의 원료 공급자로부터 밀조 공장까지의 히로뽕의 흐름을 확인한 첫 사례였다. 둘째, 그 동안의 수사방식은 하선조직에서 시작하여 상선으로 기어오르는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개별 조직밖에 검거할 수 없었으나 본 사건은 원료밀수 도매상에서 출발하여 아래로 짝 퍼진 밀조, 밀매 조직으로 내려가는 부챗살 확산 식 수사였다는 점이다. 셋째, 히로뽕 공급조직의 비호세력이 대대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수사결과 발표시 25명의 명단 중 13명이 비호세력이었으며 이중 10명이 수사망을 피해 잠적하는 등 당시 히로뽕 관련 수사관들의 비호가 만연했음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 또한 비호세력의 약화로 히로뽕계의 거물들이 줄줄이 검거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³²⁾ 즉 홍콩과 한국 일본으

32) 이 중에는 보사부 소속 마약감시원이 대다수 포함되었는데 전국 분소의 마약감시원 27명중 6명이 밀조책 이황순 사건과 관련되어 구속되거나 달아났다.

로 이어지는 ‘백색삼각지대(White Triangle) 한 축이 무너지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유통망에 대한 소탕은 80년초 향정사범의 감소에 커다란 일조를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 1986 아시안 게임 및 1988 서울 올림픽

5공화국 정부는 출범 후 국민의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경기를 유치하게 되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은 27개국 4,8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하였고, 1988년 서울 올림픽에는 당시 최대규모인 160개국 13,304명의 선수단과 240,000여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체육행사였다. 양대 체육행사는 활발한 세계교류와 문호 개방 및 자유로운 해외여행, 선진문화의 접목, 유학생의 증가 및 정부의 세계화 정책 추진 등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대 체육행사는 최소한 마약류 억제정책에 있어서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앞의 (표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종 마약류에 대한 검거 실적이 양대 행사를 치른 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으나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일본의 경우 1970년 오사카에서 열린 세계박람회 엑스포가 일본의 히로뽕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는데 박람회가 열린 이후로 사회분위기가 들뜨고 향락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외국인 특히 한국인들이 몰려왔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밀조범과 일본의 밀매조직이 연결되는 고리가 되었으며 박람회가 열린 직후 일본의 히로뽕 사범은 전년에 비해 3배 가량 폭등한 사례가 있었다.³³⁾ 당시 한국사회가 일본보다 10년에서 20년의 격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던 추세를 볼 때 1986, 1988년 양대 체육행사는 오사카 엑스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33) 일본의 강력한 폭력단 소탕정책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일본 폭력단에게 한국의 밀조조직과의 연결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조직폭력단에 있어서는 청량제와 같은 구실을 하였으며 10만 조직폭력단에 의해서 일본의 히로뽕 유통망이 장악되면서 히로뽕 사범은 가히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조갑제: 폭력과 광기의 지옥기행: 주간조선, 1984. 2월호에서 인용)

그러나 한국의 마약시장은 일본의 전철을 따라 갔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치르면서 검거된 히로뽕 사범이 1986년 862명에서 1987년엔 597% 증가한 1,459명으로 1988년엔 전년에 비해 1,861%로 급격히 증가한 3,320명이 단속되어 이러한 예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양대 체육행사는 그야말로 한국의 마약시장에 빅뱅을 가져온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라. 주요 판례

(1) 수사기관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 직후 검사 앞에서 행한 자백의 임의성

1980년 9월 검거된 심상호는 진주 등지에서 새마을 금고 이사장 등 7개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위장, 영남 일원의 히로뽕 밀조자들에게 제조기술을 지도하여 온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되었다. 검찰이 밝힌 심상호의 제자 중에는 만다린호 사건 당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던 이황순도 끼어있었으며 히로뽕을 만들어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의 기술료를 받은 혐의였다.³⁴⁾ 검사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각 항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³⁵⁾

피고인 심상호 등이 호텔, 마약감시소 등에서 구속영장에 의해 정식 구속될 때까지 마약단속반원들로부터 수 차례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엄문을 받고 마약단속반원들의 면전에서 범행의 자백을 강요받아 자술서를 작성한 후 동 단속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약감시소에서 검사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검사실에서 위 마약단속 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부인하면 다시 마약감시소로 데려간다는 은연 중의 협박 하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다할 것이다.(부산지법 1981 07. 10. 81노 506)

34) 조갑제,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월간조선, 1984년 1월호, pp.283-287.

35) 검사의 항소이유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그것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인하여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와 변호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당시 이 재판은 결국 피고 심상호가 무죄를 받게 되었다. 히로뽕 수사기관들이 물증을 확보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정적인 수사기법 보다는 신문을 통해 물증을 찾는 수사기법과 인권옹호 기관인 검사 또한 은연중에 이를 묵인 방조함에 대한 경고였다. 고문수사가 입증될 경우 자백은 물론이고 확보한 물증도 증거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선례를 남기면서 수사관의 수사기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³⁶⁾

(2) 함정수사

피고인 최정우 등이 히로뽕 밀수출의 길을 탐색하던 중 수사 정보요원을 만나 미국 비행조종사로 가장한 미군 마약수사요원을 통해 반출기로 하고 히로뽕 4몽치를 성남 소재 미군비행장에 가져갔다가 검거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함정수사에 의하여 범의가 비로소 야기되거나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경우 처벌의 타당성을 인정함으로서 현재까지 마약사범 검거와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함정수사가 인정되고 있다.

이미 피고인이 범의를 가지고 히로뽕 구입 및 밀반출 등에 관한 모의를 한 것이고 함정수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비로소 야기된 것이거나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대판 1982. 06. 08., 82도 884)

(3) 죄수

1987년 6월 케냐에서 외항선을 이용 생아편 1.5kg을 밀수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밀수한 행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

36) 심상호의 변호인은 부산의 김광일 변호사로 소형녹음기를 이용 당시 심상호가 끌려간 진주호텔 여종업원으로부터 당시의 고문 상황을 자세히 녹음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고 담당수사관을 증인으로 출석케하여 신문함으로써 함으로써 고문을 입증하였다. 유사판례, 대판 1981. 10. 13. 81도2160, 대판 1982. 2. 23. 선고 81도 3324, 대판 1983. 9. 27. 83도 1953

법이 있다고 항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확인하였다.

마약의 밀수 행위와 그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다(대판 1988. 06. 08. 88도 794)³⁷⁾

(4) 기수와 미수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기술 부족 등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의 죄책에 대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 하였다.

히로뽕 제조를 공모하고 그 제조원료인 염산에페드린과 파라디움에테르 등 수종의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미완성품에서 히로뽕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어도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미수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대판 1984. 10. 10. 84도 1973)³⁸⁾

이는 형법의 소위 불능범에 관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제조행위에 대하여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인정한 선언적 판결이다.³⁹⁾ 그러나 히로뽕 원료 구입물색과 히로뽕 제조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를 제공하고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 11. 22. 83도 2490)

37) 유사판례. 대판 1982. 12. 28. 82도 2380. "판매목적으로 히로뽕을 제조한 것은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으며 각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38) 유사판례. 대판 1985. 3. 26. 85도 206.

39) 불능범이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 즉 구성요건 실행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형법 제27조는 불능범이라는 표제하에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가벌적 불능범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미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 377)

습관성 의약품 수출죄의 기수시기와 관련 피고인 최재도 등이 히로뽕 히로뽕 4kg을 일본에 밀수출하려다가 일본 세관에 적발된 사건에 피고와 변호인 측이 습관성 의약품이 외국에 상륙됨으로써 비로소 기수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일본국에 상륙하기 전에 세관에 적발되었으므로 그 밀수 행위가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에 불과하다며 항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습관성의약품 수출죄의 기수시기를 명확히 판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

구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 38조 1항 제1호 소정의 습관성의약품 수출죄의 기수시기는 선박으로 수출하는 경우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를 벗어났을 때이다(대판 1980. 10. 16. 80노 782)

(5) 향정신성의약품 제47조 1항 몰수 및 가액의 추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의 몰수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몰수의 성질을 징벌적 성질로 규정하였으며 몰수의 대상자에 대하여도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 아니라 각자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부를 추정함으로써 추정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⁴⁰⁾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 통상의 거래가격을 말하고 통상의 거래 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할 것이며(대판 1983. 09. 13, 83도 1927) 히로뽕에 대한 몰수나 추정은 형법상의 몰수나 추정이 범행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피고인들 중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만 추정을 명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정을 명해야 할 것이다(대판 1982. 11. 09. 82도 2055)

40) 유사판례. 대판 1983. 09. 13. 83도 1894, 대판 1983. 11. 8. 83도 2031.

(5) 히로뽕 관련 현품이 압수되지 않은 경우

히로뽕 밀매 사범의 경우 대부분이 현품이 소비되었거나 타국에 양도되어 현품을 압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현품이 압수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히로뽕 밀매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단지 히로뽕이라 지칭하고 밀매하였지만 그 백색 결정체가 메스암페타민 내지 염류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학적 시험분석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일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다며 항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를 토대로 법관이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증거채택에 대한 자유심증주의를 선언적으로 판시 하였다.

문제된 습관성 의약품이 압수되어 현품이 있는 경우 관례적으로 전문연구기관에 감정의뢰를 하여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소정의 습관성 의약품인지를 과학적 분석을 거쳐 그 시험 성적 통지서에 따라 가리고 있기는 하나 매도된 히로뽕이나 밀수출된 히로뽕은 모두 소비되었거나 수출되어 그 현품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화학적 실험으로 행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대판 1980. 10. 16. 80노 782)

第 3 장 麻藥政策에 대한 一般論

第 1 節. 犯罪化 理論⁴¹⁾

약물 통제의 본질적 이유는 각종의 약물이 지니는 해악성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 보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유의 남용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는 이를 억제, 통제할 책무를 갖는다고 한다. 따라서 남용자 본인에게는 그의 육체, 정신을 황폐화하여 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특히 선량한 일반시민에게는 각종의 범죄와 일탈행위를 범하여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그것을 억제, 통제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여기에 약물남용 행위와 약물의 생산, 공급행위 등을 처벌하거나 통제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약물의 생산, 제조, 유통, 공급, 구매 등은 형사별로 제재하거나 기타의 방책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지난 100년여에 걸쳐 약물남용과 유통 등은 일련의 국제협약을 통하여 각종 통제방책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을 정도로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 공통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다만 각 국의 정책에 따라 남용자에 대한 정책의 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자는 물론이고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를 방위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보아 단속위주의 엄격한 엄벌주의로 일관되어 왔다.⁴²⁾ 그러나 엄벌정책만으로는 마약류범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반성이 제기

41) 권영현, “마약사범 수사연구: 마리카나”, (한성대 국제마약범죄학과) 강의안에서 주로 인용.

42) 형사법학에서 말하는 일반예방적 효과와 특별예방적 효과가 바로 그것이다. 즉 일반예방적 효과로는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정책이 사회일반인에게는 심리적 위하를 가함으로써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며, 특별예방적 효과로 범죄가 개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엄벌주의의 예로 마약류 관련 각종 규제법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가중처벌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되었다.⁴³⁾ 세계 각 국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특히 남용 계층에 대한) 비범죄화, 합법화 논쟁이 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금기시 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최소한 공개적으로는) 최근 이러한 의견이 극소수 대두되고 있다.⁴⁴⁾

第 2 節. 非犯罪化・合法化 理論⁴⁵⁾

약물 남용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최근 비범죄화 내지는 합법화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⁴⁶⁾ 그 근거로 첫째, 개인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약물의 남용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약물 사용 내지는 소지를 엄벌에 처하게 되면 중독자들이 그 치료를 거부하고 은밀하게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더 범죄의 길로 가게된다는 것이다. 셋째, 엄벌주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마약류의 공급행위 즉 제조, 수출·입, 공급, 판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처벌을 해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43) 약물남용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효과적인가에 관한 McGlothlin(1970)의 연구에 의하면 첫째, 법적인 제재나 적용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약물을 사용한다. 둘째, 반항적인 청소년들과 관련지어 볼 때, 법이 약물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조장한다. 셋째, 약물 남용자는 약이 금지되었을 경우 다른 약물을 찾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파격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약물 남용을 제재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단편적인 접근만으로는 약물사용이 중단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미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질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문화체육부 : ‘앞의 논문’ : 459.) 그러나 각국의 마약류 통제정책은 단속, 엄벌주의와 이에 대응하는 치료나 재활을 실시하는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나 선불리 온건주의를 채택했던 국가들도 마약중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점차 엄벌주의로 나아가고 있으며 마약류 중독자의 의무적 통보제도와 강제입원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조성남 : ‘약물남용의 법적처리에 관한 연구’ : 배제대 석사논문 : 2001 : 10)

44) 김진석, “가수 전인권과의 대담”, 사회비평, 2001년 여름호.

45) 권영현, “마약사범 수사연구: 마리카나”, (한성대 국제마약범죄학과) 강의안에서 주로 인용.

46) 이를 포괄적으로 ‘자유화론’이라 하기도 하며 비범죄화 주장이나 합법화 주장을 ‘부분적 자유화론’이라 하며 약물의 소비뿐만 아니라 공급까지도 완전히 자유화하자는 주장을 ‘전면적 자유화론’이라 한다.

이러한 일부 합법화를 시행하는 나라로는 네덜란드 등 일부 선진 구라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첫째, 마약사용 비용의 증가와 위험의 지각력이 감소한다는 점; 둘째, 유해마약의 접근이 용이해지면 공급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 셋째, 수요, 사용, 남용 및 중독자의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비범죄화 내지는 합법화의 주장은 약물 남용의 정도가 심하여 자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그의 정신, 신체가 황폐화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방치하여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각종 약물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과학이 발달되지도 못하였고, 그 개념도 불분명하며 약물의 해독에 대한 일반의 전통적 의식을 정책면에서 외면할 수 없는 현 단계에서 그 개념을 완전히 정책으로 반영하는대는 큰 위험이 따른다고 하겠다. 따라서 약물의 생산, 유통 공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기록하는 현행 정책을 추진하고 그로부터 유래되는 부작용을 연구,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보완하고 약물사용자에 대하여는 일회성, 기회성 사용자, 중독성이 약한 연성 약물의 사용자 등에게는 비처벌적 정책을 시도하면서 약물 남용자, 약물 중독자에게는 치료와 재활을 통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함이 옳은 방향이라 할 것이다. 동시에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현재의 약물 남용에 젖어 있는 자를 양성화하여 국가가 엄격한 통제, 감시 하에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로서 중세를 완화해 나가는 점은 고려할 만하다.

第 4 章 韓國의 國家 麻藥政策

第 1節 麻藥關聯 法律 政策의 變化

1. 개요

한국의 약물남용에 대한 정책은 마약류 공급은 물론 남용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처벌을 통해 사회를 방위하는 단속위주의 엄벌주의로 일관되어 왔다.⁴⁷⁾ 즉 우리나라는 약물남용의 문제를 사회문제나 보건문제로 다루기보다는 범죄행위의 한 형태로 다루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로 인식하였으며 이들을 엄벌에 처하고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약물문제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단속위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새로운 약물사용을 탄생시켰을 뿐이다. 약물남용은 시대별로 약물의 종류를 바꾸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50년대 마약문제에 대하여는 마약법을, 70년대의 대마초 문제에 대하여는 대마관리법을, 그리고 70년대말 메스암페타민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80년대에 청소년의 흡입제 남용에 대한 규제를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까지 시대별로 남용되는 약물에 대한 특별법 제·개정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규제적인 조치로 단속과 검거를 통해 감옥에 수용하는 수준이었으며 아직 약물의 위험성이나 약리작용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약물의 분류방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으며 약물이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결과 법규 상호간의 불일치나 처벌의 불균형이 적지 않아 법체계상의 문제까지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처벌적인 규제는 약물남용의 사회적 확산을 막는데 역효과

47) 이러한 엄벌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1980. 1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를 개정하여 마약의 수출, 수입, 제조 등의 행위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적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오히려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들을 계속 남용자로 남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약물 남용자에 대한 태도가 초창기에는 법적 규제나 처벌로써 다스리지만 남용자 수가 늘어나자 더 이상 이러한 제재만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⁴⁸⁾ 즉 법적 제재만으로는 약물사용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약물에 대한 다양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약물사용에 관한 처벌만을 한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⁴⁹⁾

2. 남용약물과 법률의 변천

가. 마약관련법

해방이후 다수의 아편중독자와 헤로인 등의 제조기술자들이 귀국하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1946년 11월 미군정청은 군정법령 제119호로 ‘마약 단속규정’을 발표하고 보건후생부 약무국에서 단속을 시작하였다. 1953년 형법 제17장에 아편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아편, 몰핀 그 밖의 화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 소지, 흡식기의 제조 등에 대하여 단속 처벌하였다. 이후 1957년 4월 법률 제440호로 마약법을 제정하여 단속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해방후의 혼란과 6·25전쟁으로 인한 마약사범의 증가는 미군정청의 마약단속규정이나 일반 형법으로는 이를 규제하기 미흡하였다.⁵⁰⁾ 마약이 개인 나아가 사회와 국가차원의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인도적인 관

48) 미국의 경우는 1841년 미국 보스톤의 독지가인 John Augustus가 한 알코올 중독자를 판결 전에 인수하여 개선 갱생시킨 것이 효시가 되어 1878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처음 입법화되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형의 집행 또는 선고를 유예하면서 일정기간 성행유지의 조건을 부과하는 Probation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선진 각국에서는 일찍부터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태국 홍콩 인도 필리핀 등이 우리나라 보다 먼저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다.

49) 문화체육부, “앞의 논문”, p. 451.

50) 이들 마약사범은 주로 한국전쟁 동안에 부상당한 사람들로서 진통제로 몰핀을 투약하다가 이에 중독된 사람이 많았으며 휴전 이후에는 몰핀대신 아편을 남용하기 시작함으로써 다수의 아편중독자가 발생하였다.

점에서도 각국의 관심사가 되었고 전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각국이 동일한 보조로써 국내 및 국제 간의 대책을 강구하고 상호 실천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임을 인정하고 국제 간의 준수사항 및 각국의 의무이행에 관한 협정, 조약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감안할 때 마약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보아 기존의 형법을 대체할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였다.⁵¹⁾

그러나 1957년 제정한 마약법은 제48조에 마약취급사용업자에게 격리수용장소에서 보사부 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약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마약을 교부하거나 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⁵²⁾ 제49조에는 의료업자에게는 환자가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진단하였을 때는 중독자의 주소, 성명, 연령, 성별 중독된 마약의 품명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였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 및 사망을 진단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 규정은 의료인이 마약의 도움을 요청하는 마약중독자를 신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인의 인간적인 고민을 유발하고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제50조는 보사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마약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약중독자에 대하여 강제수용소에 강제 수용하거나 지정기관에서 치료하는 형식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의 기능면에서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강제수용이 일종의 보안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중독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위와 같은 규제가 1989년 6차 개정에서 중독자를 치료 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중독자

51) 마약법 제정 전에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일반형법으로 아편에관한죄를 규정하여 단속하였으나 이후의 마약류 사범의 대부분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마약법이 적용되었다.

52)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마약취급 의료업자가 투약 또는 교부한때 관찰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나 1977년 12월 5차 개정에서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업자의 이러한 보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의 효율적인 치료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약물중독자의 강제수용조항을 삭제하고 마약중독판별검사제도와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제도를 신설할 때까지 5공화국은 여전히 단속위주의 엄벌주의로 이들을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로 인식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엄벌주의를 고수하였다. 다시 말하면 범죄의 예방적 기능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남용자에 대한 치료재활적 기능은 등한시하였다.

나. 대마관련법

대마는 1960년대 말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마리화나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청년층에 'Happy smoke'라고 지칭되면서 권위주의 정권하의 일종의 반항적 의미로 확산되었다. 정부에서는 대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0년 8월 법률 제2230호로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고 대마를 습관성의약품으로 분류 단속하기 시작하였다.⁵³⁾ 1973년 3월 일부개정을 통하여 공업적 목적을 위하여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초에 대한 수출입, 매매, 수수, 흡연, 또는 섭취, 섭취할 목적이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하여 단속을 강화하였다.⁵⁴⁾ 그러나 청소년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들의 대마초 흡연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별도로 분리시켜 강력히 규제할 별도의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였다.⁵⁵⁾

53) 60년대 마약단속의 강화로 아편중독자의 수가 감소되었으나 합성마약인 '메사돈'을 일반약에 혼합 사용하였던 '메사돈 파동'도 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정의 또 다른 이유이다. 그리고 대마의 THC성분을 두통약, 감기약, 진통제 등 일부 마약성분이 들어 있는 습관성의약품의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한 것이다.

54) 73. 3. 13. 개정 습관성의약품 제5조 2항,

벌칙 : 제38조 ①항 3호는 대마초를 수출입 하거나 수출입 할 목적으로 소지한자는 무지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8조 ②항은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전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38조의 2 ①항 2호는 대마초를 매매 또는 수수한자 또는 매매하거나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5) 1975년 가수 신중현, 이장희, 윤형주, 장현, 김추자 등 18명이 대마초 흡연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70년대 총 57명의 연예인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내지는 불구속 입건되었다.(주간조선: 2002/3/28)

이에 따라 정부는 1948년에 제정된 일본의 대마취채법을 모델로 대마의 재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그 취급을 적절히 하여 대마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대마관리법을 1976년 4월 법률 제2895호로 제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지 22일만에 공포가 되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만들어진 법률이다.⁵⁶⁾ 이 법은 무허가 취급의 금지를 위하여 법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를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⁵⁷⁾ 일반적인 금지행위로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나 대마(대마초를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대마의 수입 또는 수출, 제조, 매매나 흡연 또는 섭취하는 정을 알면서도 장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강력히 규제하였다.⁵⁸⁾ 그러나 대마종자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서 대마종자의 판매행위를 처벌할 규정은 없었으며 치료보호를 위한 규정이 1989년 개정법률에 포함되었다.⁵⁹⁾

다. 향정신성의약품관련법

정부의 강력한 마약사범 단속으로 마약중독자들이 대체약물로서 습관성 의약품을 남용하려는 경향이 만연되자 중독성 의약품 및 습관성의약품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1970년 8월 법률 제2230호로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여 대마와 함께 각성, 환각, 수면, 자율신경안정 작용이 있는 물질 등 습관성 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취급금지 및 제한규정을 두고 단속을 하였다.⁶⁰⁾ 약물중독자의 단속, 강제수용치료

56) 문화체육부, “앞의 논문”, p. 465.

57) 마약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대마를 운반 또는 보관치 못하도록 1979년 법률 제3215호로 개정하였는데 제3조 1항 본문중 소지·수수 다음에 운반, 보관을 삽입하였다.

58) 단, 대마연구자가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나 대마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9)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마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대마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대마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대마 중독자로 판별된 자에 대해서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판별기간은 1개월 이내로, 치료보호기간도 6개월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1989년 개정 대마관리법 제12조의 3)

60) 70년 이전까지는 ‘메스암페타민’ 등을 규제할 법규가 없었고 고작 밀수차원에서

등의 규정을 두었고, 1973년 3월 법률 제2613호 일부개정을 통하여 메스암페타민, LSD' 등이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었다. 1976년 4월 법률 제2896호 일부개정을 통하여 습관성의약품에 관한 범죄의 고발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보상금제를 채택하여 시행되었다. 1976년 대마관리법이 제정되어 동법에서 분리되었고 1979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동법을 대체하여 제정됨으로서 폐지되었다.

1979년 12월 법률 제3216호로 제정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제정 이유는 대내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으로 규제하여 적정 관리하였다. 그러나 습관성이 없는 일반의약품으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품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일부 청소년층 또는 약물중독자가 오·남용하여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같이 규제 받지 않고 있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약품도 함께 규제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체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취급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외적인 요인으로 1971년 2월 비엔나에서 체결되고 1976년 8월 발효된 UN의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에 1978년 1월 가입하여 동년 4월 조약 제619호로 발효됨에 따라 동 협약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규제법규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그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특이한 것은 제 30조에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되어 자제심을 상실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1989년 4월 법률 제4215호 1차 개정으로 통하여 사용자에게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그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¹⁾

밀수출을 단속하는데 그쳤다.(문화체육부: 앞의 논문: 461)

61) 1989년 개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

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법

본드, 신나 등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는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되었다.⁶²⁾ 1963년 12. 31. 법률 제1492호로 제정된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독물 및 극물의 관리를 적절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약물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70년대말 청소년 사이에 환각작용을 일으키며 저가의 구입이 용이한 본드, 신나, 접착제, 도료 등 환각물질의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이러한 흡입용 환각물질은 사용자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신상태 하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물질을 흡입한 경험이 있는 자들은 다른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⁶³⁾ 이에 따라 1980년 12월 법률 제3332호의 개정을 통하여(제23조의 2를 신설),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에 대하여 고의로 이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정을 알면서 판매 또는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 사회보호법

정부의 강력한 약물 단속 정책과 더불어 약물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위해 1980년 12월 법률 제 3286호로 사회보호법이 제정되어 사회의 보호와 교육개선 치료를 위한 감호와 보호관찰을 행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규정하였는데 약물중독자와 가장관련이 있는 치료감호는 종래의 형사제재의 한계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과거의 행위나 책임과는 상관없이 장래의 위험성에 따라 과해지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⁶⁴⁾

62) 1990년 법률 제4261호.

63) 문화체육부, “앞의 논문”, p. 468.

64) 사회보호법의 실질적인 재정이유는 삼청교육대 입교생에 대한 보호감호처분을 위함이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의 3종이 있으며 ‘치료감호’는 책임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정신병동 등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여 치

(1) 보호처분의 대상자

(가) 보호감호의 대상자 : 사회보호법 제5조에 규정된 자⁶⁵⁾

(나) 치료감호의 대상자 : 사회보호법 제 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약물중독자에 대하여는 1항 3호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흡식, 섭취, 흡입, 흡연 또는 주의 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다) 보호관찰의 대상자 : 사회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약물 중독자와 관련 하여는 1항 2호에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의 대상자가 된다.

(2) 내용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 교화하고, 피보호 감호자의 동의 하에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으며 피치료 감호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류 등의 종류에 따라 습벽 및 중독된 구분에 따라 분리수용) 감호하고 완치를 위한 치료를 하게 하고 피보호 관찰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장소에의 출입제한이나 특정물품의 사용금지 기타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료개선을 통하여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로서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속한다. 치료감호는 책임무능력자, 한정 책임능력자 마약류 등 알코올 중독자 등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몰수, 범죄행위에 이용된 시설 또는 영업소의 폐쇄 등의 처분인 대물적 보안처분과 구별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1994: 15-16.)

‘보안처분’이란 기존의 응보적 형벌이 범죄예방에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형벌의 영역에 들어왔으며 이같이 형사제재의 수단으로 형벌과 보안처분이 병존하는 제도를 형사제재의 이원주의라 하며 스위스 형법 초안에 제시된 후 곧 유럽 여러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였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도 채택 시행하고 있다.

65) 제5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88헌가 5,8,89 헌가44(병합) 1989. 7. 14)

바. 기타 법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⁶⁶⁾

마약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규제하는 법률로 제11조에 마약의 불법 수출 수입 및 제조 등의 행위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소지, 재배, 사용 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였고 그 가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였다.

(2) 약사법⁶⁷⁾

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제45조의 2에 중독성이나 습관성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이나 진열을 금지하였으며 제55조에 무면허 마약류 등 의약품 판매, 판매용량 초과, 규제약품 판매 등을 규제하였다.

第 2節 麻藥關聯 國家機關의 變化

1. 개요

마약관련 국가기관으로는 보사부(현 보건복지부)의 식약청과 검찰, 경찰, 세관과 이들 기관에서 압수 또는 수거한 증거물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이 있으며 한국의 마약 정책은 강력한 단속을 통한 엄벌정책을 고수하여왔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

66) 1966. 2. 23. 법률 제1744호로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67) 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1965년 중독성 및 습관성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제45조의 2에 중독성 및 습관성의약품의 판매나 판매목적의 저장이나 진열을 금지하였다.

기관 또한 수사력을 강화하거나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특히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사부 마저 1957년 마약법 제정 당시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마약감시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마약문제를 보건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범죄의 영역으로 취급하여 정부의 엄벌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왔다.

1989년을 기점으로 보사부의 마약감시원제도를 폐지하고 마약감시원 일부가 검찰로 이체되고 보사부는 마약류 관리계획 및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등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국가기관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추적인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은 더욱 강력한 수사력을 확보키 위한 경쟁을 벌여 왔다. 그 결과 검찰은 고유 기능인 공소제기 및 유지, 수사지휘 등의 업무보다는 수사에 중점을 두고 마약사범의 검거에 주력해 왔으며 보사부의 마약감시원을 받아 들였다. 이어 최근에는 마약수사요원을 공개 채용하는 등 수사인력 증가에 주력해 왔고 경찰 또한 제도적, 구조적인 뒷받침 없이 마약수사전담반 지정, 각종 마약류 일제단속기간 설정 등 관서간 실적 경쟁을 통한 마약사범 검거를 독려해 왔다.

이러한 과도한 수사기능 확대 경쟁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 즉, 경찰과 검찰의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경찰의 마약수사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견제를 받아야 했다. 양 기관은 수사가 어려운 상선위주의 수사보다는 검거가 용이한 투약사범 위주의 검거에 치중하고 이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수사력 부재를 교묘히 위장하고 마약류 확산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을 조성한 결과 중독자 및 단순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면이 등한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보사부(식약청)

1989. 2월 마약류 수사의 일원화를 위해 수사기능이 검찰로 이체될 때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부서이다.⁶⁸⁾ 1957년 마약법이 제정되면서 제55

조에 마약감시원을 두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며 소형총기류도 휴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약감시원과 다른 사법경찰 직원은 필요한 경우에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활동영역이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되었다. 마약류 감시원은 마약에 대한 가장 막대한 양의 정보와 수사력을 가지고 마약류 단속에 커다란 일조를 하였으나 1980년 만다린호 사건 등으로 10여명이 연루되어 구속 내지는 잠적함으로써 비호세력으로 낙인찍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꾸준한 마약감시원 증원으로 1988년 10월 각 시도에 581명까지 확대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⁶⁹⁾

1989년 12월 대통령령 제12619호로 마약과를 마약관리과로 개칭하고 마약수사업무의 검찰 일원화에 따라 마약감시인력 77인을 검찰청으로 이체하고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는 마약류 관리계획을 수립 조정하고 중독자의 치료, 재활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⁷⁰⁾

3. 검찰

정부의 강력한 제조책 단속과 1986년과 1988년 세계적인 양대 체육 행사를 거치면서 80년대 후반 마약류 남용계층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한국이 마약의 주요 소비국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1989년 2월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신설하여 당시 보사부 마약감시원 77인을 전직시켜 전문화되고 일원화된 강력한 마약수사체제를 확립하였다. 1989년에는 도핑 콘트롤센터 등 감정제도를 도입하였다. 1990년 전국 마약수사반 전산단말기 설치, 1991년 간이검사 침단시약 개발 등에 이어 최근 국가마약퇴치전략을 내놓고 마약과를 마약부로 승격시키는 등 마약퇴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68) 1952년 수급과에서 분리하여 마약과가 신설되었으며, 1970년 2월 약정국산하 마약과로 직제가 개편되었다.

69) 1988. 10. 12. 대통령령 제12295호.

7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에서 주로 인용.

4. 경찰

해방이후 경찰 단독 또는 검찰, 보사부 마약감시원 등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마약퇴치에 커다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이 마약수사체제를 강화한 1989년 이후에도 경찰관의 검찰 파견제도 등으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현장검거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1988년 이후 마약사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8년 4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부산시경 및 산하 10개 경찰서의 마약전담반에 대한 마약류 사범 수사교육을 실시하고 T.B.P.E 소변검사를 대행해 주면서 경찰과 검찰의 연대수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89년 4월 시 소재 각 경찰서에 마약수사 전담요원을 배치하였으나 각종 근무와 병행하여 실질적인 전담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1991년 8월 경찰청 개청 후 1994년 형사과 내에 마약계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마약 전쟁을 시작하였다. 최근 마약계에서 마약과로 승격하고 지방청에 마약계를 신설하였으며 일선 경찰서에 마약반을 설치하는 등 마약류 수사요원 959명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수사체제를 확립하여 마약퇴치에 앞장서고 있다.⁷¹⁾ 그 결과 2001년도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 10,304명중 6,079명을 경찰이 검거함으로써 59%의 비율을 차지하는 등 10년 이상 마약을 전담해온 검찰의 검거력을 넘어서고 있다.⁷²⁾ 앞으로도 마약류 근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검찰도 마약수사 요원을 공개채용하고 마약수사 기능을 강화한 현 시점에도 파견경찰관제도가 존치하고 있어 근본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남용약물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뇨, 모발 등 생체시료 및 각종 압수 증거물에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류, 대마, 비규제 남용약물 및 환각성 유기용매제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1909년 4월 법무국 행형과 지문계를 효시로하여

71) 경찰청, “경찰백서”, 2002. (<http://www.police.go.kr>)에서 재인용.

72) 검찰청, “마약범죄 백서”, 2002. (<http://www.sppo.go.kr>)에서 재인용.

1931년 8월 경기도 경찰국 형사과에 지문계를 설치, 1935년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 법의이화학실 및 형사사진실을 신설하여 독극물에 대한 이화학 적 감정을 시작하였다. 1946년 4월 법무국 행형과 지문계와 경기도 경찰부에 속해있던 지문계를 통합, 경무부 수사국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지문사무를 관장케 하였다. 그 후 경기도 법의이화학실과 형사사진실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의학 실험소를 설치하였다.⁷³⁾ 1955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제를 개정하여(대통령령 제1021호)오늘날의 체제를 확립하였다. 1992년 5월 운영규칙 개정으로 운영감독을 경찰청에서 하게 되었다 현재는 법의학과 법과학부의 2부 체제를 갖추었으며 마약업무는 법과학부 마약분석과에 마약연구실과 향정약물 연구실, 환각물질 연구실을 두어 담당하고 있다.⁷⁴⁾

약물의 분석 감정과 관련하여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분말을 분석 어떤 마약인지 알아내는 정도였으나 1986년에 처음으로 마약복용자의 소변에서 히로뽕을 검출, 복용사실을 증명해 내면서 전기가 마련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마약사건이 급증하자 효과적인 마약분석을 위하여 1993년 미국에서 모발분석법을 도입하는 등 마약분석업무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1997년 세계에서 10곳 정도밖에 안 되는 기준실험실(Reference Lab)의 지위도 얻게 되었다.⁷⁵⁾

6. 관세청⁷⁶⁾

공, 향만 등지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밀수범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1970년 8월 관세청 내 감시국 산하의 1개 과에서 수출입 통관과정에서의 제반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제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조사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서울, 부산, 인천지역에는 심리분실을 편성하여 밀수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⁷⁷⁾ 1972년 남해안 지역의 특공대 밀수에 대응하기 위하여

73) 지문감식 사무는 치안국 수사지도과 감식계에서 관장하였다.

74)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isi.go.kr>)에서 인용.

75) 조선일보(2002/ 8/ 12) ; 세계일보(2002/ 10/ 7).

76) 임대환, “마약밀수 단속의 효율화 방안”, 연세대학원, 2000, pp.4-5.

77) 1996년 이전에는 조사업무를 심리업무라고 하였으며 70년 당시에는 지방세관

기동감시선단을 설치하였다. 1987년 관세청에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심리기획관실을 설치하였고, 1990년 4월 심리기획관실에 마약밀수 등을 전담하는 정보과를 신설하였다. 1990년 8월부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거 마약류 관련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권을 확보하였다. 1996년 7월 조사 조직 및 기능을 대폭 개편 심리기획관실을 조사국으로 변경하고 특수조사과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마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1년 171명을 검거함으로써 전체마약류 사범의 1.7%를 검거하였으나 마약류 공급차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第 3節 治療再活 政策의 變化

마약류 억제 정책을 수요와 공급의 차단정책으로 크게 나누어 본다면 한국은 최소한 80년대까지는 공급 차단 위주의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일반병원에서 약물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⁷⁸⁾ 실제로 마약법 제48조에 마약취급 사용자에게 격리 수용장소에서 보사부 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약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마약을 교부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49조에는 의료업자에게는 환자가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진단하였을 때는 중독자의 주소, 성명, 연령, 성별, 중독된 마약의 품명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마약중독자의 치료 및 사망을 진단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규정은 의료인이 마약의 도움을 요청하는 마약중독자를 신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인에게 인간적인 고민을 유발하고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였다.⁷⁹⁾

또한 보사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마약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강제수용 하거나 지정기관에서 치료

조사기능이 세관장 하에 있지 않고 본청장 직속에 있었다.

78) 1957년 제정 마약법 제48조~49조.

79)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마약취급 의료업자가 투약 또는 교부한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나 1977년 12월 5차 개정에서 마약취급 의료업자의 이러한 보고제도를 폐지하였다.

하는 형식적인 규정과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 제도를 두고 있었다.⁸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의 기능면에서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강제수용이 일종의 보안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중독자인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의 소지도 안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약물남용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는 ① 보호관찰, ② 치료보호, ③ 치료감호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실태를 보면 검거인원에 비하여 1%이내의 극소수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치료기간이 짧아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⁸¹⁾

1. 보호관찰

일시적인 잘못으로 경미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시설 내에 수용하여 처벌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보호선도위원의 지도와 감독 하에 교화 및 선도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원호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1989년 7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2. 치료보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마약중독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인 치료보호 기관으로 하여금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여부를 판별 검사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1957년 마약법 제50조와 1979년 향정

80) 법률 제440호로 제정된 마약법 제50조. 사회보호법의 제정이유는 제2장 2절 주요사건 '삼청교육대'를 참조할 것.

81) 조성남, "앞의 논문", p. 12.

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에서 중독자의 강제수용과 치료를 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1989년 마약법과 대마관리법 제12조의 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 등에서 치료보호의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1990년 대통령령 제13045호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정’으로 제정되었다. 1986년 국립서울 정신병원에 전문치료병동이 개설된 후로 현재 전국적으로 약22개의 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있다. 치료보호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에는 527명이 치료보호를 받았는데 대상자의 그 대부분은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자였다.⁸²⁾

(표 13) 중독 마약류별 치료보호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 도	합계	마 약	대 마	향정신성의약품
1988	527	1	2	524
1989	335	3	1	331
1990	178	-	1	177

출처 : 조성남, "약물남용의 법적 처리에 관한 연구", 배제대 석사논문, 2001. p 15
에서 재인용

3. 치료감호

범죄를 저지른 약물중독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위하여 금고이상이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자를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의 하나인 치료감호를 위하여 1987년 공주 치료감호소가 처음 설립되었다(대통령령 12232호). 치료감호의 요건은 우선 약물중독자이어야 하며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⁸³⁾ 약물중독자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며 치료감호는 원칙적

82) 조성남, "앞의 논문", p. 15.

83)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적 약물 사용자체가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치료감호의 대상이 된다.

으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평균 1년 정도의 치료 및 재활기간을 거치고 있다.⁸⁴⁾

84) 사회보호법 제9조 2항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第 5 章 國家麻藥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한국의 마약류 억제정책에 있어서는 외형상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 시대 남용되던 마약류에 따라 필요한 법규를 제정 시행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구체적인 산물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즉 남용계층에 대하여 사회문제나 보건문제로 다루기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타나는 범죄행위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이들을 엄벌에 처하고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을 유일한 대안책으로 여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마약류 단속은 새로운 마약류의 남용을 가져왔다. 즉 아편 등 마약에 대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대별로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여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조치로 단속과 검거를 통하여 감옥에 수용하는 즉흥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아편 등 마약에 대한 집중단속은 대체약물로 대마의 소비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집중단속은 히로뽕의 남용을 가져온 것이다. 예컨대 메스암페타민과 관련 하여는 강력한 밀조 밀매조직 소탕으로 70년대와 80년대 백색 삼각지대(White Triangle)의 중심 축에서 마약류 밀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밀매루트를 상실한 조직들이 잉여물량을 국내에 유통시킴으로써 히로뽕 남용자를 양산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강력대응으로 최근에는 주요 소비층이 또다시 마약과 대마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순한 경제논리로 마약류에 대한 수요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급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책당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는 정책당국이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최소한 80년대는 거액의 비용투자와 그 성과가 눈으로 확

인하기 곤란한 치료재활 등 수요억제정책 보다는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공급억제에 우선순위를 둔 면이 있다. 그러나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수요와 공급억제의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수요차단 대책으로 각종 사회단체에서 마약류 남용방지를 위한 홍보, 위험성에 대한 경고 방송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정부차원의 홍보와 계몽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치료를 원하는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에 의하여 치료보호제도를 활용하거나 중독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치료보호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치료프로그램을 개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⁸⁵⁾

둘째 공급의 억제를 위하여 국제마약기구와 협력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수사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수사기법의 개발이 중요하다. 즉 마약류 수사는 단순 투약자에서 상선으로 올라갈수록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한 단계씩 다가서서 공급자를 추적하여 검거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수사이다. 따라서 각급 수사기관에서는 마약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10여년 이상 전문화된 수사체제를 갖춘 검찰의 노하우와 마약관련 정보, 수사기법 등을 각 기관이 공유해야 한다. 현재 마약관련 수사는 전국적으로 관할의 개념 없이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경찰관서간 또는 검찰관서끼리 또는 경찰과 검찰간에 사건의 경합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의 외형적인 확대보다는 이에 대한 전산화된 수사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으며 경찰의 거대한 조직과 정보력을 검찰의 막강한 법적 권한과 노하우를 조화롭게 이루어 내는 방안을

85) 조성남, “앞의 논문”, pp. 21-29.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민수. 「마약류 범죄의 남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 석사논문
경찰청. 「마약류 범죄 수사」. 2001.
- 경찰통계연보. 1980~1989.
- 국정원. 「마약류 생산실태」. 2001.
- 김달림. 「약물범죄수익박탈제도에 대한 소고」. 전북대 석사논문. 1997.
- 권영현. 「마약범죄수사요령1.2.3편」. 강의자료.
- 대검찰청. 「마약백서」. 1979. 1990, 2002.
- 문화체육부.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와 예방대책 연구」. 1996.
- 박해룡. 「마약사범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수사연구. 「마약수사, 이래서 힘들다」. 2002. 4월호.
- 신의기. 「해외마약범죄 어떻게 수사하고 있나」. 수사연구. 2002. 4월호.
- 세계일보. 2002. 10. 7.
- 이필구.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HIV」.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http://www.aids.or.kr> 에서 인용).
- 인권운동 사랑방. 제2186호. 2002. 10. 2.
- 임대환. 「마약밀수 단속의 효율화 방안」. 2000.
- . 「마약사범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2001.
- . 「마약밀수 실태와 조사제도 및 기법」. 협동문구. 2001.
- 정희선. 「생체시료에서 마약류의 검사」. 신일상사. 2000.
- 조갑제. 「코리안 커넥션」. 월간조선. 1983. 12월호.
- .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월간조선. 1984. 1월호.
- . 「폭력단과 광기의 지옥여행」. 월간조선. 1984. 2월호.
- 조병인. 「마약류문제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5권. 1994.
- . 「마약류 단속을 위한 국제협력」. 수사연구. 2002. 4월호.
- 조선일보. 2002. 8. 12.
- 조성남. 「약물남용의 법적처리에 관한 연구」. 배제대학교 석사논문. 2001.
- 한국 마약퇴치 운동본부. 「약물상담전문가 종합교육」.
- 형사정책 연구원. 「약물남용의 실태와 통제방안」. 1993.
- .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1994.
- 차용범. 「히로뽕 지옥 부산의 밤과 낮」. 월간조선. 88. 8월호.

(인터넷 홈페이지)

국과수 홈페이지(<http://www.nisi.go.kr>).
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po.go.kr>).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ow.go.kr>).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c.re.kr>).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go.kr>)

(기타 인터넷 사이트)

<http://www.aids.or.kr>
<http://www.daesang.co.kr>
<http://www.forjustice21.com.ne.kr>
<http://www.publica.chungju.ac.kr>
<http://www.sarangbang.or.kr>
<http://www.soc.chonbuk.ac.kr>

Abstract

A Study on Drug Crime and Drug Policies in Korea

- A Focus on The Chun Regime(1980-1987) -

Kim, Dong In

Dept' of International Drug-Related Criminolog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drug crimes as well as drug policies in modern Korea, in particular, concentrating on the Chun and Roh regimes(1980-1992). In exploring both the patterns of drug trafficking and the changes of the legal perspective related in national anti-drug policies, this paper offers constructive alternatives for decreasing drug abuse and drug-related crime. In this respect this paper above all criticizes some problems of traditional drug policies, so much stressing strong penalty to drug-related crime.

Firstly, in order to decrease both drug addicts and criminals this paper suggests to need amend some codes of current 「2000 Narcotics Law」 which is still insufficient in the level of both dru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econdly, it is indispensable to reform inner system of drug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the prosecution, the custom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tc., to make better deploy the anti-drug policies. In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this paper addresses ① that such agencies should involve more actively in anti-drug campaign; ② they should develop investigative techniques, while can operate an integrated computer network sharing drug-related information; ③ they also ne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exchanging drug information with other countries. Finally, this paper stresses which should establish realistic programs through the fundamental reform in policies of drug treatment & rehabilitation.